##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0

발의연월일: 2020. 7. 7.

발 의 자: 장철민·김진표·임오경

박영순 • 윤미향 • 이광재

최종윤 • 안호영 • 홍영표

맹성규 · 양이원영 · 송옥주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이를 받을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없는 상황임.

한편,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고, 체당금 지원수준 등이 제한되어 체불임금 중 25%는 청산되지 못한 실정임. 또한 체당금 지급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의 회수율도 낮아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 책임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체당금 지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당금 신청·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변제

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을 재직·퇴직 근로자로 확대하고, 체당금 지급 범위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함(안 제1조 및 제7조의2 신설).
- 나.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예에 따라 변제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 재산 등에 대한 보전압류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 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변제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4 신설).
- 라. 사업양수인이나 출자자가 변제금, 지연이자 및 체납처분비 등을 납부할 2차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 마.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부정수급을 제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못하고 퇴직한"을 "못한"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변제금"이란 제8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리 대위행사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등을 말한다.

제7조의 제목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등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임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퇴직한 근로자"로, "제4호"를 "제4호 또는 제5호"로, "제1항제4호"를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근로자"를 각각 "퇴직한 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근로자가 제4항"을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으로 한다.

다만,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호를 중복하여 적용하

지 아니한다.

-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 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 직급여등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2(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 (이하 "재직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 하면 제7조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호의 금액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 안 지급받은 3개월분을 한도로 한다.
  -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 ③ 재직 중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이후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체 당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직 중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공 제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④ 재직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체당금의 상한액,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로 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보전압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당금의 한도에서 사업 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것
- 2. 사업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나.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다.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 라.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마. 경매가 시작된 경우
  - 바.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사.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금의 납부 또는 변제금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 3. 변제금을 납부고지한 후에는 해당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것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 1.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업주가 변제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경우
-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변제금 납부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의3(납부기한 전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제8조의 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변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변제금을 징수하는 경우 새로운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의 변경사유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고지를 하였을때에는 납부기한이 변경을 알려야 한다.
- 제8조의4(징수유예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1. 천재·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2. 압류를 하면 사업이 회복불가능한 위기에 처할 것이 명백히 예상

되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고용노동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할때에는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는 변제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한 후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변제금 전액을 일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승인취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변제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의5(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인 사업주에게 부과된 변제금, 지연이자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인 사업주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양수인인 사업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인인 사업주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6(출자자의 제2차 납부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변제금, 지연이자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발생 당시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제8조의7(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된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 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소액체당금 지급일 이전 3년 이내 5천만원 이상의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 경우
- 2. 소액체당금 지급일 이전 3년 이내 10명 이상에게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기준, 부과절차 등 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체당금을 청구하거나"로,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근로자"를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7조"를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임금체불의 신 속한 청산을 위해 필요하거나 제7조 또는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 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 출한 재산목록의 사본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을 각각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금의 5배"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변제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 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 제 29조, 제32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 주"로, "보험료",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는 "변제금"으로, "연체금"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변 제금에 대한 지연이자"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본다.
- ③ 부과금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의 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 제29

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는 "부과금"으로, "연체금"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가산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본다.

제1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7제1항에 따른 부과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 제19조제3호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조에"를 "제7조 및 제7조의 2에"로,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체불사업주,"를 "체불사업주, 제8조의5에 따른 사업양수인, 제8조의6에 따른 출자자,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등(이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은"을 "자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부담금이나"를 "부담금, 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이 나"로. "체당금·부담금"을 "체당금·부담금·부과금"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 를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체당금이나 제7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를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체당금이나 제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을 "공무워 등"으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불 임금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전압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임금체불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지급된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 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변제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집행처 분 등 그 밖의 행위(근로자의 청구 또는 신청 등을 승계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제1조(목적)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	
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	<u>못한</u>
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 "변제금"이란 제8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리
	대위행사에 따라 사업주가 납
	부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등
	을 말한다.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체
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불 임금등의 지급)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	
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단서 신설>

1. ~ 4. (생 략)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 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 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u>다</u>
만,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
니하는 한 각 호를 중복하여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
게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
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
등・사업주확인서"라 한다)를
<u>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u>
금등이 확인된 경우
2
3,45 -3 3-5
<u>제4호 및 제5호</u>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2. (생 략)<신 설>
- ③ <u>근로자</u>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u>제4호</u>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u>제1항제4호</u>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u>근로자</u>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

<u>.</u>
1
임금
<u> </u>
2. (현행과 같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등
③ 퇴직한 근로자
ـــا ال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
<u>제4호</u>
또는 제5호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u>.</u>
· ④
<u>퇴직한 근로자</u>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u>근로자</u>가 제1항에 따라 체 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 동부렁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 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 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u>근로자가</u>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
  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⑦ (생 략) <u><신 설></u>

5
<u>퇴직한 근로자</u>
<u>,</u>
⑥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
,
⑦ (현행과 같음)
세7조의2(재직근로자에 대한 체
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
동부장관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
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
료되지 않은 근로자(이하 "재
직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

 면 제7조제1항에 따라 체당금

 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각호의 금액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지급받은 3개월분을 한도로 한다.
-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 른 휴업수당
- ③ 재직 중 제1항에 따른 체당 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이후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당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직 중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 ① 재직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체당금의 상한액,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u>제7조의2(</u>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생 략)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 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 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 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 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 「근로기준법」 <u>제38조제2</u> 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 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 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 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 속하다.

<u><신</u>설>

<u>한다.</u>
제7조의3 (현행 제7조의2와 같음)
<u> </u>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u>제</u>
<u>7조 및 제7조의2</u>
②제38조

제8조의2(보전압류) ① 고용노동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당금의 한 도에서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u>것</u>

- 2. 사업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u>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u> 분을 받은 경우
  - <u>나.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u> <u>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u> 경우
  - 다.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라. 「어음법」 및 「수표

     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

     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u>마. 경매가 시작된 경우</u> 바.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사.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변제금의 납
    부 또는 변제금의 체납처
    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
    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
    고 인정된 경우
- 3. 변제금을 납부고지한 후에는 해당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신 설>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문서 로 알려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 1.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사업주가 변제금에 상당하는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요구한 경우
-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지날 때까지 변제금 납부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3(납부기한 전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제8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
라도 변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변제금을
징수하는 경우 새로운 납부기
한 및 납부기한의 변경사유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고지를 하였을때
에는 납부기한이 변경을 알려

<신 설>

야 한다.

- 제8조의4(징수유예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1. 천재·사변 및 이에 준하는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소
  - 2. 압류를 하면 사업이 회복불가능한 위기에 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 주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고용노동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할 때에는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수 있다.

- ④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는 변제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유예또는 분할납부를 승인한 후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변제금 전액을 일괄하여 징수할 수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승인취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금을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 보보전에 필요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변제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인정되는 경우

제8조의5(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

<신 설>

<신 설>

부의무) ① 사업이 양도·양수 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 인인 사업주에게 부과된 변제 금, 지연이자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인 사업주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양수인인 사업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 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인인 사업주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 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8조의6(출자자의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 다 보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 이 납부하여야 할 변제금, 지연이자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임금체를 발생 당시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

<신 설>

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는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8조의7(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된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소액체당금 지급일 이전 3년 이내 5천만원 이상의 소액체 당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 경우
- 2. 소액체당금 지급일 이전 3년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 |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미 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 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 수하다.

② ~ ⑤ (생 략)

이내 10명 이상에게 소액체당 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 경 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 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 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과 제2 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기준, 부과절차 등 부과금 및 가산금 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7조 및 제7조의2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u>근로</u> <u>자는</u>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 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 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근로자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 단에 발급할 수 있다.

#### ③ (생략)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저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수 있다.

근로자
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체당금을 청구하거나
임금등·사업주확
<u>인서</u>
2
<u>임금등 · 사업주확인서</u>
근로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
지공단
③ (현행과 같음)
세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u>근로감독사</u>
무 처리과정에서 임금체불의 신
속한 청산을 위해 필요하거나
제7조 또는 제7조의2

② (생략)<신 설>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고용 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당금도는 융자금을 받으려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u>제7조 및</u> <u>제7조의2제1항</u>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그 체당금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
2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
주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발
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사본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제7조, 제7
조의2 및 제7조의3제1항
②제7조, 제
<u>7조의2 및 제7조의3제1항</u>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③ 제2항에 따라 체당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④ (생 략) 제16조(준용) (생 략)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③
체당금의 5배
<u>개 6 묘 기                                 </u>
•

- ④ (현행과 같음)
- 제16조(준용)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변제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26조의2,제27조,제28조,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제28조의7,제29조,제32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이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는 "변제금"으로, "연체금"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신 설>

징수금"은 "변제금에 대한 지연이자"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본다.

③ 부과금 및 그에 대한 가산 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 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 까지, 제28조의7, 제29조, 제30 조, 제32조 및 제39조를 준용한 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 "월별보 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 정보험료"는 "부과금"으로, "연 체금"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가산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 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
  - 1. (생 략) <u><신 설></u>
  - 2. ~ 5. (생략)
  - ② (생략)
-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 2. (생략)
  - 3. <u>제7조의2</u>에 따른 체불 임금등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4. ~ 8. (생 략)
-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 특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u>본다.</u>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제8조의7제1항에 따른 부
과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
금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기금의 용도)
1.•2. (현행과 같음)
3. 제7조의3
4. ~ 8. (현행과 같음)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
조요청) ①
제7조 및 제7조의2에
 제7조의3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따라야 한다.

1. 법원행정처장에게 <u>체불사업</u> 주, 부당이득자 및 연대책임 자(이하 "체불사업주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 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 11. (생략)

②・③ (생 략)

제24조(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u>공</u> 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 받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제	1 ই	· 당에	H	라	출	입	• 겉	]사-	를
하듺	=	공	무원	]은		1 건	빈힌	을	丑	시
하늮	=	증	표를	= >	시니	고	o`	를	관)	계
인선	게 7	4]	내년	ļ여	야	한1	<b>구.</b>			

#### ②・③ (생략)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지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게한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②
자는
제26조(소멸시효) ① <u>부담금, 부</u>
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이나
<u>체당금·부담금·</u>
<u>부과금</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①
120-(21)
1
제7조 또는 제7조의2
에 따른 체당금이나 제7조의3
<u> </u>
2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체당금이나 제7조의3
<u> </u>
<삭 제>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부당하게 <u>제7조에 따른 체당</u> 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 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 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 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자

<u><신 설></u>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②
1 <u>제7조 또는 제7조</u>
의2에 따른 체당금이나 제7조
<u>9</u> 3
2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체당금이나 제7조의3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사실을 자진신
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
으로 수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u>.</u>
<del>27 년</del> 30조(과태료) ①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u>1천만원</u>
부과한다.	
<u>&lt;신 설&gt;</u>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
	출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	3
항에 따른 관계 <u>공무원</u> 의 질	<u>공무원 등</u>
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